건설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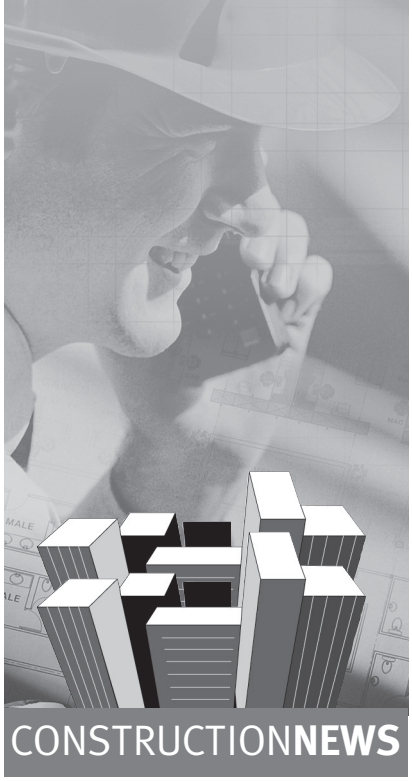

CONSTRUCTION**NEWS**

20명 이상 건설현장, 7월부터 주 40시간제 적용

7월부터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중소건설사의 경우 본사는 주 44시간, 현장은 40시간을 적용하는 이원적인 근로형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3월 공포(7월 1일 시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건설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산정방법은 총인건비를 1인당 인건비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총인건비는 공사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을 곱해 산출하고 1인당 인건비는 건설업 월 평균 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는 건설현장의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서로 다른 사업체가 섞여 있어 적용받는 근로시간이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2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체는 물론 20명 이상 건설현장 까지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소액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건설현장의 근로자 20명 이상이 주 40시간제 대상이다.

대부분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중소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경우 본사는 종전처럼 주 44시간제를 적용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이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1억원 규모 공사라도 공사기간이 짧으면 20명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으로 참여한 공사는 대부분 주 40시간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발주정보 검색 쉬워진다

7월부터 모든 사전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기업들이 모든 공공기관의 사전 발주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준화 및 통합작업

을 추진해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공공조달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사전 발주정보는 사업목적 · 예산 · 발주시기 등 발주정보 공개내용이 공공기관마다 통일되지 않고 정보 공개도 잘 이뤄지지 않아 특정 업체에 대한 정보 편중 현상이나 별도의 비공식 정보 획득 활동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사전 정보를 획득한 특정 업체의 제품만 규격서 등에 반영돼 공정한 경쟁입찰을 저해하고 계약 진행 때 특정업체의 규격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을 들 수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기관의 경우 발주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내용도 사업목적 · 규모 · 예산 등의 필수 발주정보 등록내용을 표준화해 제공함으로써 조달업체가 발주정보의 이용 및 분석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된 발주정보는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 품명별 · 지역별 · 업종별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절차에 발주정보 공개절차를 개선해 법령이행 준수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사전에 발주정보 공개를 반드시 거쳐야 다음 단계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새로 가동되는 공공기관 발주정보 표준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은 발주정보 공개를 통해 다수 업체에서 구매대상 상품정보 획득과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조달업체는 사전에 다양한 발주정보 획득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태료 납부 신경 쓰세요"

상습체납 땐 영업정지 까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과태료 납부에 더욱 신경 써야할 전망이다.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는 물론 30일 내 감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를 일원화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이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각종 노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도 이 법령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토록 했다.

또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령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해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허가를 취소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내에서 감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각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규정했다.

과태료 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가 가능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닥터제 "효과 있네"

협력사 매출 · 경쟁력 향상 도움

전경련의 협력사 맞춤형 자문 프로그램인 '경영닥터제' 가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영닥터제가 협력사의 매출 증대 및 신규사업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닥터제는 대 · 중소기업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영자문을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외부 컨설팅과는 달리 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자문 프로세스가 운영돼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경영자문 과정에서 협력사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브리핑과 워크숍, 세미나 등이 병행 추진돼 협력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경영닥터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기업의 전담인력 선임과 협력업체의 전담팀 구성,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전담인력은 중소기업센터와 공동으로 경영닥터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협력업체 전담팀은 관련 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진단에 따른 처방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CEO의 인식 변화와 의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센터 관계자는 "올해 주요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영닥터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관리시스템 재정비 시급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대책 분주

최근 들어 일반건설업체들이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부실업체 퇴출 및 우수업체 육성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수단으로 활용됐던 시참제가 폐지되면서 효율적인 하도급 업체 관리를 위해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실업체는 과감하게 퇴출하는 한편 우수업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갖춘 하도급 업체만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몇해 전부터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하도급 업체 소수정예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하도급 업체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시참자 폐지로 인해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반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교육보다는 노무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무관리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해 하도급 업체의 노무행정비용을 줄이고 업무진행에 따른 시행착오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참제 폐지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노무관리 교육 등 하도급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설업체들은 시참제 폐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일반건설업체들은 시참제 폐지로 인해 발생가능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하도급 업체들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반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들이 저가경쟁을 지양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회보험료 및 노무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현장 점검 투명해진다

국토부 '행동요령' 개정 시행

건설현장 점검이 투명해지고 피점검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투명하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현장 점검 및 품질관리 확인, 레미콘 · 아스콘 · 철강구조물공장 조사, 감리조사와 국가계약법상 기성 및 준공검사 때 적용한다.

개정요령을 살펴보면 점검자는 조사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직접 휴대하고 피점검자로부터 식사를 포함한 어떤 편의도 제공받으면 안 된다.

또 점검에 앞서 피점검자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 자필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자 체크리스트도 작성해 점검내용 및 범위,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과다 조사를 금지했다.

사후대책으로는 청렴전화제도와 점검설문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점검자로 하여금 피점검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렴한 점검이 이뤄졌음을 통보하고 국토부 장관과 점검기관장이 점검자의 충실이행 여부를 피점검자 의견을 통해 확인토록 규정했다.

국토부 장관과 점검기관장은 피점검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 청렴도 설문조사도 별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점검 때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이 끝난 후 피점검자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했다.

이의제기 기한도 현행 점검일 이후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려 피점검자가 점검과정의 잘못된 점을 치밀하게 조사, 대응할 수 있게 바꿨다.

피점검자가 제기한 이의사항을 심의할 검토위원회의 위원 수도 3명에서 부실벌점 검토위원회와 동일한 5명으로 늘렸고 접수일 후 20일 이내로 규정된 통보시한은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전국 1,040곳에 대한 건설현장 점검부터 곧바로 적용하되, 중복점검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거래가격 원가 반영 확대

조달청은 입찰가격 산정 때 시장거래가격의 원가반영을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은 입찰제도개선과 함께 예정가격 산정때 실적공사비 및 시장시공가격 등 시장거래가격의 원가반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이나 질적공사비 및 시장시공가격 등을 참고해 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나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거래가격의 공사원가 반영비율은 공사비 대비 현재 30% 수준에서 연말까지 50% 이상으로 확대되며, 특히 시장시공가격의 경우 올해 중 현재의 2,329개 품목에서 4,511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622개 품목 친환경 건축마크 획득

친환경 건축자재(HB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2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HB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은 276개 업체, 622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접착제가 238개로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페인트가 124개, 바닥재 65개, 벽지 46개, 판넬 39개, 목재 2개, 기타 108개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최우수 등급인 클로버 5개가 488개로 79%에 달했고, 우수 54개, 양호 32개, 일반Ⅰ 34개, 일반Ⅱ 14개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5개 제품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39개의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 평가를 한 결과 16개 제품, 평가제품의 11.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

증마크 사용을 정지당했다.

HB마크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정제도로, 건축자재의 실내공기질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2개 항목의 방출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 친환경건축 마크

노후 화장실 135곳 초현대식으로 개선

서울 근교 산과 도심 공원의 화장실이 넓은 규모에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 이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근교 산과 도심 공원의 화장실 600여곳 가운데 이용객이 많고 지은 지 20년 이상된 관악산과 수락산 등의 노후 화장실 135곳을 2010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에 모두 137억6천만원을 투입, 올해 화장실 27곳의 시설을 향상시키는 데 이어 내년과 2010년에 각 54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화장실이 평균 33㎡인 면적을 66㎡ 이상으로 확대 · 개선할 예정이다.

재미있는 건교상식

도전! 신나는 수자원 기네스

▲ 세계에서 저수용량이 가장 큰 댐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Kariba 댐입니다. 그 규모는 1,806억톤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인 소양강댐 29억톤보다 무려 62배나 큽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은 섬진강 다목적댐으로 높이 64m, 길이 344.2m, 체적 41만㎥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섬진강댐은 1961년 8월에 착공해 1965년 12월에 완공된 이후 호남지방의 동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진강으로 방류된 물은 김제평야의 곡창지대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댐은 백제 비류왕(AD 330년) 시절에 축조된 김제의 벽골제로 높이 5.7m, 길이 3,240m, 댐체적 28만㎥입니다.

▲ 세계 최초의 수도시설은 B.C 1450년경 이집트에서 사용한 시설로 물을 침전시킨 후 사이펀(낙차원리 또는 증류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대의 수도로 대표적인 것은 B.C 312년에서 B.C 305년에 건설된 578km 규모의 로마 수도이며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 근대식 수도시설은 프랑스에서 1746년경 최초로 소규모 여과장치를 이용한 방식이며 최초로 정수처리를 시작한 곳은 1832년 스코틀랜드의 Paisley로 최초로 도시규모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염소소독제는 1902년 벨지움의 소도시 Middelkerke 정수장에서 최초로 이용한 후 보편화돼 현재까지 범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기록은 2002년 8월3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강릉 지역에 내린 870.5mm입니다.